

歐美의 石油稅制

구미 주요국은 현재 각국 모두 개발소비세와 일반소비세의 2중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개발, 일반 모두 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구미주요국의 석유, 가스세제는 ①국세, ②일반소비세, ③개별소비세의 3重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1932년에 국내 석유정제업자 보호를 위해 석유 수입국세가 도입되었으며, '73년 5월에 수입라이선스제의 채택에 따라, 일단 폐지되었으나, '75년 12월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석유관세는 LPG와 아스팔트를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 및 원유에 대하여 관세율포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석유가격하락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石油가격 하락에 따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수입과징금이라는 전혀 별개의 세제이다.

EC가맹국에 있어서는 '68년 이후 점차 EC 공통관세가 채택되고 있으며, EC역내무역(원유,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원유에 관해서는 역외관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다. 또한 관세수입은 모두 EC 공동체 재원이 되고 있다.

일반 소비세는 미국은 州稅로서 45州에서 채택하고 있다. 과세단계는 小費店頭출하단계, 납세의무자는 소매업자이며, 소매업出稅라고 불리운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州에서 면세취급되고 있으며, 뉴욕州, 캘리포니아州등 12개州에서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세율은 소매가격의 2%(버지니아州)에서 6%(캘리포니아州, 일리노이州, 미시시피州)까지 州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석유제품에 대한 小費業出稅收는 버지니아州

와 조지아州에서 도로정비에 충당되고 있는 외에는 모두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州에 따라서는 소매업出稅收에 특정지구 가산을 더하기도 하고 혹은 군이나 면이 독자재원으로서 소매업 出稅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

EC 가맹국에서는 각국마다 독자 일반 소비세외에 EC 통일 일반 소비세로서 '70년부터 점차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다단계 과세방식이다. 석유제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단, 영국에서는 자동차용 연료유에 대해서는 15%의 표준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밖의 난방유 등에 대해서는 제도세율이 적용되어, 실질면세 취급되고 있다. 서독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에 14%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8.6%가 적용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농업, 어업용 석유제품 및 重油에 9%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에는, 모두 18%의 표준세율이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대하여 과세된다. 外船 선박용을 포함한 수출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산업용, 상업용으로 소비된 석유제품(발전용, 중유나 영업용, 트럭용 경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세부담자에게 환급된다. 각국의 부가가치세수는 그 합계의 1.4%를 상한으로 하여 EC재원으로서 처리되어, 나머지는 모두 일반재원으로 되고 있다. 또한 EC위원회는 현재 가맹국에서 차이가 있는 과세표준 등을 '92년까지 조화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

石油消費稅 國稅比較

| 日 本 | 英 國 | 西 獨 | 프 랑 스 | 이 탈 리 아 | 美 國 |
|--|--|--|--|--|--|
| <p>가솔린稅 輕油인수稅 石油가스稅 航空機燃料稅 石油稅</p> | <p>炭化水素稅 (Hydrocarbon Oil Duties)</p> | <p>鑛油稅 (Mineralölsteuergesetz)</p> | <p>①內國消費稅(TIPP) ②特別稅(賦課金) 炭化水素支援基金賦課金(FSH) 프랑스石油研究所賦課金(IFP) 에너지—國家基金特別稅(CNE)</p> | <p>鑛油製造稅</p> | <p>가솔린稅(連邦稅) 디젤·特別燃料稅(連邦稅) 非商業航空用燃料稅(州稅) 燃料賣出稅(州稅)</p> |
| <p>根據 法規</p> | <p>炭化水素油稅法(1928年)</p> | <p>鑛油稅法</p> | <p>內國消費稅法(1948年) 等</p> | <p>法律 No. 334(1939年)</p> | <p>가솔린稅(內國歲入法) 디젤·特別燃料稅 (內國歲入法) 非商業航空用燃料稅 (內國歲入法) 自動車燃料稅(州憲法) 燃料賣上稅(州憲法)</p> |
| <p>課稅 目的</p> | <p>일반제원확보</p> | <p>①에너지, 經濟, 交通의 各 種 政策 목표의 달성 ②일반제원의 확보</p> | <p>內國消費稅는 一般財源確保 特別稅(賦課金)는 特定財源確保</p> | <p>일반제원의 확보</p> | <p>道路整備等의 재원확보 항공연료세는 공항정비 특정재원확보 연료매출세는 일반제원(일부 부특정제원) 확보</p> |
| <p>納稅 義務者</p> | <p>수입자, 제조자, 보세창고 업자</p> | <p>과동</p> | <p>과동</p> | <p>과동</p> | <p>가솔린稅—輸入者, 製造者 디젤·特別燃料稅—小賣業者 非商業航空用燃料稅—小賣業者 自動車燃料稅—도매업자 燃料賣出稅—小賣業者</p> |
| <p>課稅 段階</p> | <p>정유공장 저장탱크 출하단계(출고세)</p> | <p>과동</p> | <p>과동</p> | <p>과동</p> | <p>製油所出荷段階, 도매小賣業者販賣段階</p> |
| <p>課稅 對象</p> | <p>수입·국내生產石油製品 原油 가솔린 輕油 제트燃料油 LPG</p> | <p>과동</p> | <p>과동</p> | <p>과동</p> | <p>輸入·國內生產石油製品 가솔린 自動車輕油 自動車用 LPG 가스오일 家庭用暖房油 重質油</p> |
| <p>用途 免稅</p> | <p>①未納稅移出 및 未納稅인수 ②輸出 ③石化製品계조용 ④發電用 보일러등 특정용 도 면세 ⑤정제용</p> | <p>①수출용 ②시험용 샘플 ③정유공장내 自家消費 ④航空機, 船舶燃料 ⑤난방, 發電用 LPG ⑥특별히가 근거한 산업·공익사업용</p> | <p>①수출용 ②合成化學製品 원료용</p> | <p>①輸出 ②航空機用 ③石油化學用 ④國鐵用 ⑤農業企業의 發電用, 農業機械運輸用</p> | <p>①政府, 外交官, 유엔에료 용 ②농업용 ③道路외사업용 ④輸出用 ⑤非營利團體用 ⑥기타 생략</p> |